

광주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5350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5. 체결한 증여계약을 30,364,88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364,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2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5. 체결한 증여계약을 54,165,78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165,784원 및 그 중 25,759,070원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D 주식회사는 2016. 12. 3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3 차량에 관하여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로 28,000,000원을 이자 연 19.9%, 연체이자 27.9%,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E 대표이사 C은 E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C은 2017. 4. 5. 처인 피고에게 당시 가액 28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이라 한다) 2017.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017. 4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의 2013년, 2015년 채권최고액 165,600,000원, 38,500,000원의 근저당권이, G의 2016. 9. 21.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C은 2017. 4월부터 2017. 6. 30.까지 F 2013년 대출에 관하여 원금 135,526,690원을 변제하고 2015년 대출에 관하여 원금 29,108,422원을 변제하였다. G에게 E가 2016. 12. 30. 26,000,000원, 2017. 2. 21. 4,000,000원, 2017. 3. 31. 5,000,000원을, 피고, C이 2017. 6. 30. 각 51,000,000원, 3,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F의 근저당권은 2017. 7. 4., G의 근저당권은 2017. 6. 30.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 D 주식회사는 2017. 7. 27. E에게 대출이 2회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며 잔여금 전체를 납부하라고 최고하였다.

○ H 주식회사(D 주식회사의 2021. 1. 13. 변경된 상호)는 2021. 6. 17. 원고에게 E,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21. 8. 3.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2021. 8. 18. 기준 위 할부금 채권의 원리금은 54,165,784원(원금 25,759,070원 + 인수이자 27,129,982원 + 인수후이자 1,276,732원)이고, 2022. 5. 4. 기준 원리금은 58,351,527원(원금 25,759,070원 + 인수이자 27,129,982원 + 인수후이자 5,462,475원)이다.

○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C에 대한 보증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C의 처로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친정어머니인 I이 사위인 C에게 이미 거액을 대여한 것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친 I이 E의 계좌로 2016. 4. 28. 85,000,000원, 2016. 5. 10. 23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닌 정당한 증여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물반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증여 이후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F과 G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30,364,888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84,000,000원 - F 135,526,690원 - 29,108,422원 - G 8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5. 체결한 이 사건 증여를 30,364,88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0,364,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아파트 L동

[도로명 주소] 광주 광산구 M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스라브지붕 20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285.9548㎡

2 내지 20층 각 442.952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N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84.993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광주 광산구 J 대 43772.2㎡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43772.2분의 52.6526. 끝.

